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지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079

발의연월일: 2025. 3. 19.

발 의 자: 박지원·오세희·허성무

박균택 · 정진욱 · 권칠승

이재관·황 희·이소영

박해철 · 김 윤 · 양부남

정동영 · 황명선 · 임미애

김승원 · 김준형 의원
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각종 정부 정책의 수립이나 평가, 다른 통계의 작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정통계로 지정될 수 있는 통계의 대상 항목을 열거하고 있음.

이러한 대상 항목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가 포함되어 있는데, 해당 통계에는 생활인구 관련 통계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지방소멸대응 정책 수립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도 지정통계의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1항제2호).

법률 제 호

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제2호 중 "지역발전"을 "지역발전 및 지방소멸대응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	제17조(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
취소)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	취소) ①
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	
의 각종 정책의 수립·평가 또	
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	
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	
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지역발전</u> 을 위한 정책수립	2. <u>지역발전 및 지방소멸대응</u>
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	
통계	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